

**2021년도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종합 금융지원  
신규 대상 기업 선정 공고**

‘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’의 2021년도 신규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2월 29일  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**1. 사업목적**

- 다양한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혁신성·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·자금수요에 맞게 종합적·적극적 금융 지원

**2. 지원분야**

- 「혁신성장 공동기준\*」에 따라 9개 테마(46개 세부분야), 306개 품목  
\* 자세한 사항은 [별표1]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리스트 참고

**3. 관련법령**

-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(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),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(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), 제18조(세계적 유망기업 육성),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(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)

**4. 지원내용**

-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혁신성·기술성을 감안한 정책금융 기관의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
-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·보증·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한도 확대,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상 혜택도 부여
- 금융지원 외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
- \*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[별표2]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안내문 참조

## 5. 신청자격 등

### □ 신청자격

- 중견<sup>1)</sup>·중소기업<sup>2)</sup> 중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에 따른 306개 품목을 취급\*하며,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기업
  - 1) '중견기업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기업임
  - 2)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- ① 산업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
  - \* 월드클래스기업, 유턴 승인기업, 사업재편 승인기업, 규제샌드박스기업, 우수기술 연구센터(ATC)기업, 세계일류상품(현재, 차세대 포함) 생산기업, NEP/NET 인증 기업, 소재·부품·장비 으뜸기업
- ② 국내외 벤처캐피털로부터 최근 3년 누적 20억 원 이상 투자 유치 이력 보유
- ③ 최근 3년 간 기술신용평가(TCB) T1~T3 받은 이력 보유
- ④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(CAGR) 최근 3개년 20% 이상 또는 1개년 50% 이상

#### <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 적용 방법 >

1. 회사 영위사업(또는 보유기술) 중 특정사업(또는 기술)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과 부합하면 적용 가능
2. 전방산업(도·소매, 운송 등은 제외), 후방산업(범용성 부품 등은 제외)도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적용 가능
  - (연관성의 원칙) 기업의 사업분야, 보유기술 또는 제품이 공동기준 품목과 직·간접적으로 연관\*되어야 함
    - \* 직접적 연관 - 품목의 설명과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
    - 간접적 연관 - 품목의 전·후방 산업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
  - (차별성의 원칙) 연관성과 함께 기업의 사업분야, 보유기술 또는 제품이 가지는 차별성\*이 설명되어야 함
    - \* 차별성 - 범용성 제품·부품이나 도·소매와 같은 단순 사업형태가 지양되어야 함을 의미하며,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, 기술 또는 제품의 우수성 등을 포함
3. 품목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R&D 실적(특허 출원, 정부인증 등)을 바탕으로 실용화 단계에 있을 경우 적용 가능
  - (가능성의 원칙) 기업의 사업분야, 보유기술 또는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을 설명해야 함
    - \* 제조업의 경우 R&D를 통한 양산준비단계에 있어야 하며, 제약·바이오 업종의 경우 특허를 취득하고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했거나 전임상시험에 진입한 경우 실용화단계라고 볼 수 있음

## □ 지원제외
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,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,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
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기자본 전액 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경영자 평판(횡령, 배임 등)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은 경우
- 수년간 연속으로 대규모 적자 지속, 매출 정체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경우

## □ 우대사항

- 월드클래스기업, 사업재편 승인기업, 규제샌드박스기업, 세계일류상품(차세대에 한함) 생산기업, 소재·부품·장비 으뜸 기업으로 산업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(3점)

## 6. 선정방법

### □ 평가방법

- (요건심사)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검토
- (서면평가) 보유·미래 확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, 연구개발 역량 및 인프라 구축 현황, 향후 투자 및 인재 확보 전략 등 평가
  -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은 “선정가능과제”로 하며, 70점 미만인 기업은 “선정제외”로 분류함. 단,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

**< 평가항목 및 배점 >**

구분	평가항목	평가 고려사항	배점(점)
보유 기술 혁신성 (50)	1) 연구개발 인프라	① 기술개발조직 및 개발인력의 우수성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	20
	2) 연구개발 역량	①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②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(보유 혹은 미래 확보 기술의 독보성(모방 난이도), 제품화 시 시장지배력) ③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④ 향후 핵심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	30
향후 성장 가능성 (50)	3) 기업 성장 추이	① 최근 3년간 매출액, 수출액, 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여부	10
	4) 최근 투자실적과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	① 최근 3년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②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확보 계획의 치밀성 및 타당성 ③ 인력, 시설, 장비,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④ 자금 수요(대출, 보증, 투자) 및 시급성	25
	5) 핵심인재 확보 및 인재육성 적극성	① 최근 3년간 고용 현황 ②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③ 핵심인재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	15
<b>합 계</b>			<b>100</b>

## 7. 신청방법

### □ 신청방법

구분	내용
접수기간	■ 2020. 12. 29 (화) 09시 ~ 2021. 1. 21 (목) 17시
접수처	■ <a href="mailto:finance20@kiat.or.kr">finance20@kiat.or.kr</a> 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* 접수 마감일 17:00 이후 접수 불가함 * 접수 후 1-2일 이내 접수결과 안내메일 회신 예정. <u>회신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 전화 필요(02-6009-3506)</u>
서식교부	■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-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motie.go.kr">www.motie.go.kr</a> )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kiat.or.kr">www.kiat.or.kr</a> )
접수절차	■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, 접수메일( <a href="mailto:finance20@kiat.or.kr">finance20@kiat.or.kr</a> )로 송부 * 혁신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고, 나머지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 파일로 제출 *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압축하여(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) 1개 파일 발송(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)

유의사항	① 접수 마감일 17:00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②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, 결과발표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③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-----	---

## □ 제출서류

구분	번호	제출서류	수량
공통 서류	①	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신청서	1부
	②	혁신성장전략서	1부
	③	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	1부
	④	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1부
	⑤	우대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	1부
	⑥	최근 3개년도('17~'19)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※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'표준재무제표증명' 또는 '재무제표 확인' 페이지를 포함 제출	1부
	⑦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법인명으로 출력)	1부

\*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(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)

## 8. 기타 유의사항

-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최종선정 후 선정된 기업 명단은 대외 공개 원칙
- 선정된 기업의 혁신성, 경영실태 등을 매년 재점검할 예정이며, 미흡한 기업은 혁신기업에서 제외
- 선정 후 금융지원 신청 시 금융기관별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, 심사 통과 시에 금융지원을 실행하고 심사 미통과시 기업이 원하는 경우 비금융지원 (예: 컨설팅) 연계

## 9. 문의처
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(02-6009-3506, hjcho@kiat.or.kr)